

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006
------	------

2017년 8월 30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7년 8월 30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관광체육국장 안준호)

가. 제안이유

- '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□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□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□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,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지위 유지가 요구됨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~15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와 함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협력사업, 공동상품 개발·홍보,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온 바,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서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서울시장의 제출한 것임.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나.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현황

-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는 1999년 1월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 등 5개 시·도가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각 시·도가 사업예산을 분담하고 매년 운번제로 간사를 맡아 사업을 주관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력 사업계획 수립, 공동 상품개발·홍보,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- 협의회의 주요사업은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,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,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촉활동,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며,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하기관(관광공사 등)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, 2015년 간사도시인 서울수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“2015 수도권 5개 시·도 관광협력사업”을 위탁하였음.

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은 <표1>과 같음.

〈표1〉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최근 3년간 추진실적

		2014	2015	2016
간 사		충청북도	서울특별시	경기도
사업예산		330,000천원 (시도별 분담금+국외여비+이월금)	260,000천원 (시도별 분담금 50,000천원+국외여비)	282,079천원 (시도별 분담금 50,000천원+이월금)
서울시 분담금		55,000천원	50,000천원	82,079천원 (50,000천원 + 이월금)
추진실적	홍보 콘텐츠 제작·배포	○ 중화권 온라인 홍보 - 시도별 5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공 - 조선닷컴 중국, 바이두, QQ.com 등 홍보	○ 5개 시도 통합 관광안내 지도: 1만부 ○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손수건: 350개 ○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테이블보: 300개	-
	해외 홍보·마케팅	○ 중국(심양, 북경) - 관광홍보설명회, 주요여행사 비즈니스 미팅	○ 대만, 홍콩 - 관광홍보설명회, 트래블마트 370회 상담 - 대만 교통부관광국 방문	○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- FIT 관광홍보설명회 -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KTO지사 간담회
	팸투어 / 탐방 프로그램	○ 해외 언론인 초청 팸투어 : 10명 - 상해 언론인 8, 케이에어투어스 2 ○ 청소년 한강유역 문화관광 탐방: 172명 - 청소년 139명, 시도관계자 33명	※ 메르스로 인해 중단	○ 국내 여행 전문가 등 팸투어: 125명 - 내국인 파워블로거, 여행작가 등 ※ 서울지역 팸투어: 26명 참가 ○ 외국인 유학생 한류코스 팸투어(40명) - 서울지역 8명 참가 (충북, 강원지역 관광) ○ 청소년 한강유역 역사문화탐방 : 125명 - 청소년 100명, 진행자 16명, 시도 9명 - 서울시 참가(학생 18명, 교사 1명) ※ 공중파 TV 방영(SBS 모닝와이드)
	기 타	○ 5개 시도 관광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	○ 수도권 5개시도 관광협력사업 활성화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용 * 연구용역 기관 : (사)한국관광학회 ○ 5개 시도 관광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	○ 5개 시도 관광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

다. 협의회의 필요성

- 관광의 수요자, 즉 관광객은 관광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떠나 여행하기 쉽고 따라서 다양한 관광상품의 연계가 필요하며, 관광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.
-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에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,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을 위해 협의회를 통해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고, 일부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, 이러한 연계를 통해 수도권 5개 시·도 관광협력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.

라. 협의회의 법적요건

- 협의회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하려면 구성요건 및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바,

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구성 이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〈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설립절차〉



- (지자체 협의) 처리사무, 경비 부담방법, 기타 협의회 운영사항 등
- (규약제정) 명칭, 구성 자치단체, 관장 사무, 조직·위원 선임방법,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의 내용 포함
- (지방의회 의결) 각 자치단체 의회는 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 사항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중심자치단체*에 통보
 - *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)
- (고시)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고시
- (보고) 중심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
(시·군·구 → 시·도지사, 시·도 → 행정자치부 및 관계 부처 장관)

○ 그러나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, 그 경우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기구가 되며, 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위법의 우려가 있어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「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」(2016.10.31.)를 내린 바 있음.

○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미 지난 1999년 1월에 구성하였고 해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, 법령상 사전 이행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은 문제이므로,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,

이 규약의 의결 후, 고시, 행정자치부 보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설립 의도에 맞는 협의회로서 활동하여 수도권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마. 협의회 사업추진상 문제점

- ‘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’ 검토보고서에서 협의회는 매년 주관 시·도가 달라짐에 따라 각 시·도의 담당자 변경과 주관 시·도에서 원하는 바가 각각 달라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, 협의회 연혁, 협의회 구성 이후 매년 추진한 사업내용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와 그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.
- 수도권 관광진흥사업은 일회성 행사 보다는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체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른 외국 유명지역 연계형 관광자원과 전주어도 손색이 없는 상품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관광협력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,

수도권의 관광 재료와 스토리를 연계하고 공간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관광객과 관광 상품이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협의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

의안 번호	20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'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- 나. 이에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나.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다.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수도권외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,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지위 유지가 요구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~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지원팀 김보경 (☎ 2133-2827)

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(안)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,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
3. 경기도
4. 강원도
5. 충청북도

제3조(사업 추진) 본 협의회는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제4조(처리사무) 본 협의회는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.

1.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
3. 수도권 5개시도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에 대한 사항
4.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는 협의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
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, 회의 운영의 기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장) ①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

윤번제로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개최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
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의결과 처리)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합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전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고, 위원장은 협의안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“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 ”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·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제13조(사무인계인수)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규약개정)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 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(인)

인천광역시시장 (인)

경기도지사 (인)

강원도지사 (인)

충청북도지사 (인)